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도시계획과-21869
등록일자	2015.10.26.
결재일자	2015.10.2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도시계획팀장	도시계획과장	도시환경국장	부구청장 직위대리	
류성완	代류성완	이수진	배경섭	10/26 주윤중	
협조자	도시관리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염태웅				

『 전국 최고수준 규제개혁 달성을 위한 』

##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(안)



2015. 10. .

강 남 구  
(도 시 계 획 과)

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b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(지방도시계획위원회)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계획조례 제3조(설치 및 기능)
<b>추진 경위</b>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-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-610(2014.7.11)호 - 구청장님 지시사항(2015.2.12.) - 서울시 규제개혁 종합계획(2015.4.28.)
<b>예산 사항</b>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• 비예산
<b>수혜자 및 범위</b>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 • 강남구민 및 서울시민
<b>분야 별 검토사항</b> (계속 : 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O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X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X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X ) ⑤ 시장조사 ----- ( X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X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O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X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X )
<b>타 기관 사 례</b>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- 서울시 및 25개 각 자치구 공통사항
<b>전문가 자 문</b>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 • 전 문 가 : 해당사항 없음. • 자문결과 : 해당사항 없음.

『 전국 최고수준 규제개혁 달성을 위한 』

#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(안)

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의 장기화 방지 등을 위해 서면심의를 허용하여, 우리구가 전국 최고수준의 규제개혁 달성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기여코자 함

## 1 추진 근거

-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-610(2014.7.11.)호
- 구청장님 지시사항(2015.2.12. 정례국장회의)

<규제 개혁 관련>

각 분야에서 잘못됐거나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으니 규제개혁에 힘쓰기 바람.

-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(2015.5.6.)
-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247(2015.4.14.)호 및 5656(2015.6.30.)호  
-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의 장기화 방지 요청  
(반복심의 제한 및 서면심의 허용 등)

## 2 위원회 운영개선 계획

- 서면심의 대상
  - 1) 사안의 중요성,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
  - 2) 위원회 자문 안건(법적, 비법적 자문 포함)
  - 3) 실무 소위원회 안건(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정)

## ○ 서면심의 운영방법

1)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메일로 서면심의 안건 송부

※ 필요시 심의 신청자가 해당 위원에게 제안사항 설명

2) 해당안건에 대한 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의견서(붙임1 참조) 수합

※ 위원회 담당 주무관 이메일 또는 부서 팩스로 수합

## ○ 시범 운영

1)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요청한 사항이며, 서울시에서도 적용현황에 대하여 파악중인 사항으로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,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**우리구는 의결 사항이 아닌 자문사항에 한정하여 시범 적용**

2)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서면심사 등이 명문화될 경우, **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제10조(운영세칙) 제1항에 따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즉시 적용이 가능함**

## 3 기대 효과

○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개인 재산권 제한 최소화로 구정 신뢰도 상승

○ 우리구가 전국 최고수준의 규제개혁 달성 자치구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

## 4 향후 계획

○ 시행일 : 본 방침 결재일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접수분부터 적용

○ 2015. 11 ~ 2016. 3 :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모니터링

○ 2016. 1 ~ 3 : 타 시·군·구 운영현황 벤치마킹

○ 2016. 4 ~ 6 :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 작성.

붙 임 1. 서면심의 의견서 양식 1부.

2.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부.

3. 자치구 운영 사항 1부. 끝.